

인천지방법원 2021. 12. 22 선고 2020가단238775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우

담당변호사 신준우, 양성은

피 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

담당변호사 박영수

변 론 종 결 2021. 11. 3.

판 결 선 고 2021. 12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9. 7. 10.부터 2020. 7. 16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소외 C 소유이던 충북 옥천군 D 토지 및 지상 건물(이하 이를 통틀어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5. 9. 25. E조합(이하 ‘E’이라고 한다)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.

그후 피고 회사는 E과 사이에, 피고 회사가 E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(이하 ‘이 사건 피담보채권’이라 한다)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.

C는 2019. 12.경 사망하였고, 그 아들인 소외 F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, F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자, E은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. 12. 6.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호증,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, 피고 회사가 E으로부터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면,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재차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(이하 ‘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수도대금의 일부와 수수료 등으로 합계액 6,000만 원을 지급하였다. 그런데 피고 회사가 E으로부터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46조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인정사실

아래의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- ① 원고의 지인인 G은 2015. 1. 23.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경락받았다. 그후 G은 2015. 8. 27. 전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거주 중이던 망 C(이하 ‘망인’이라고 한다)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(증인 G의 증언, 갑 제2호증).
- ② 망인은 2015. 9. 25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을 근저당권자로, 채권최고액을 6억 5,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E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(갑 제2호증).
-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인 G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망인은 2018. 12. 13. 사망하였고, F이 이를 단독상속하여 그 소유권자가 되었다. 그후 E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이 부실화된 대출채권을 피고 회사에게 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(갑 제2호증, 을 제4호증). 그후 피고 회사는 위 5억 원의 양수도대금을 E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위 채권을 양도받지 못하고 있었다.
- ④ 한편 G을 통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현황을 알게 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, E의 담당자(H)는 이미 E과 피고 회사 사이에서 채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며 피고 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하였다(증인 G, H의 증언).
- 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. 7. 4.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300만 원을, 2019. 7. 9. 5,7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합계액 6,000만 원을 지급하였다(갑 제4, 5호증, 을 제6, 7호증. 증인 G의 증언,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아닌 소외 I과 사이에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).
- ⑥ 한편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. 12. 6.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. 그러자 원고는 2019. 12. 18. F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 그후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2020. 3. 12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(갑 제2호증, 증인 G의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(제4회 변론조서)).

⑦ G은 피고 회사에게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6,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, 피고 회사의 담당자는 수수료 1,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,000만 원만을 반환해주겠다고 답변하였다(갑 제8호증).

2) 구체적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,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기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E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, 그 무렵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,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E이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기에 이르렀는데, E은 통상의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근저당권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특별히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점,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상,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E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해 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‘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E으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무’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은 민법 제546조에 따라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6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. 7. 1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. 7. 16.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, 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상의 조건 즉, 원고는 ‘피고가

E으로부터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양도받는 것'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의 불이행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46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없거나,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배상 채권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E과 사이에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, 원고와 사이에 2019. 7. 4.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약 5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E에게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채권을 양도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, 결국 E이 2019. 12. 6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E이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는데, E이 근저당권을 실행한 것에 관하여 원고가 특별히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.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,000만 원을 지급한 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병국